

「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697호

「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첫째, 결손시세 징수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징수하는 결손 체납시세 징수금 중 일정액을 기본공제 명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,
- 둘째, 탈루·누락세원 등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의

적용대상 범위가 2년경과 취득세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소득세,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 등 1년경과 신고납부 세원으로 확대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셋째, 체납세액 징수시 매년 1~2월에 징수하는 직전년도 체납세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, 적극적인 징수활동 촉진을 위하여 1~2월 징수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,
- 넷째, 소송제기를 통한 승소 시 특별한 징수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위장이혼이나 은닉재산 추적에 준하는 지급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독려하고자 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

규정 완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
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조항 삭제 등
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주시고 부칙조항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
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19. 11. 21.

재무국장 이병한